

의안번호	제672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6월 일 (제330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형근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4년 6월 2일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6월 2일

발 의 자 : 김형근, 김희수, 심기보
김봉희, 임 현, 김영주
최미애

1. 제정이유

남녀 공무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, 삶의 질 제고와 가정을 중시하는 도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함. : 제18조제2항(안)
- 가. 특별휴가 규정 중 양성평등을 위해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 : 제18조제3항(안)
- 나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: 제18조제7항(안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안전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하였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여성공무원이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마다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여자공무원” 을 “공무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유급으로 한다. 단,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</p> <p>제18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</p> <p>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마다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</p> <p>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<u>여자공무원</u>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⑦ 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</p> <p>제18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여성공무원이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마다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<u>공무원</u>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⑦ <u>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유급으로 한다. 단,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. <개정 2012.2.1.>
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